

나.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가 해

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

제28조의4(주택 수의 산정방법) ①

~ ⑤ (생략)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, 조합원입주권, 주택 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(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한 소유주택을 말한다) 수에서 제외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

가. (생 략)

나. 제28조의2제3호 · 제5호 · 제6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주택

다. ~ 바. (생 략)

<신 설>

제28조의4(주택 수의 산정방법) ①

~ ⑤ (현행과 같음)

(6) _____

1. -----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제28조의2제3호 · 제5호 · 제6호 · 제12호 및 제18호----

다. ~ 바. (생 략)

바. 제28조의2제17호에 해당하는 주택